

2025년도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안내

1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 사업 ?

-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
(사업참여일 기준 만 60세 이상: 1965년생 및 이전출생자)

2 참여대상

1) 참여자

- 일반형 참여자: 만 60세 이상 자
- 세대통합형 참여자: 만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
※ 청년(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)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

○ 참여제외

- 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
- 예시)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, 국민취업지원제도 등
- ②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 사실이 있는 자
-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
- 세대통합형의 경우, 참여 직전 90일 이내 해당 기업 취업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한 참여 제외 조건 예외적용
- ③ 당해연도 인턴십 참여 도중 2회 이상 중도 포기한 자
- ④ 인턴십 참여시작일 기준 이미 4대 보험 자격을 취득 중인 자
- 인턴십 참여 직전 90일 중 일용직으로 근로일 30일 이하 근무한 경우 제외
- 인턴 시작일 이전 퇴직하였으나 사업주의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해 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사실 관계 파악(상실 신고 내역 등 확인 및 증빙) 후 참여 가능
* 인턴십 참여 중 4대 보험을 이중 취득한 경우(인턴십 참여기간 중 근로일 30일 이하 일용직제외 부적격자로 관리)
- ⑤ 인턴십에 참여한 자가 동일 사업장에 재참여하는 경우
- 인턴십 참여시작 연도기준 5년이 경과한 경우 재참여 가능
- ⑥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개 이상 사업장에 참여하는 경우
- 인턴기간 중도해지자는 1회에 한해 1개월 이상의 잔여기간 동안 재참여 가능
-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(대표자)와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 관계에 있는 자
- ⑧ 인턴십 참여 전 30일 이내 해당 기업에 취업알선형 참여 사실이 있는 자
- ⑨ 국내 거주자 중 외국인
- 국적 취득자(주민등록번호 소유자)에 한하여 참여 가능

2) 참여기업

- 참여기업요건: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을 대상
 - ※ 단, 기업 여건상 4대 보험 가입 요건이 일부 미충족 되는 사업장의 경우, 가입 요건이 충족 되는 보험의 가입내역과 미충족 사유 제출 후 인정 시 참여 가능
- 참여자에 대해 1년 이상 장기고용의사가 있는 기업 및 계속 고용률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
- 참여 제외 기업 및 직종

<참여 제외 기업>

- 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
- 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
- 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
 - ※ 단,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,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
 - ※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·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
 - ※ 고령자 고용지원금,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기간이 중복될 경우를 제외하고 지원가능
- 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이 없는 기업
- 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

<참여 제외 직종>

- 제외 직종(58개 직종) : 국회의원·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 임원, 기업 고위임원, 정부행정 관리자, 법률·경찰·소방·교도관리자, 경비·청소관리자, 정부·공공행정 전문가, 회계사·세무사·감정전문가, 조세행정·관세행정·국가지방행정 사무원, 대학교수 및 강사 2개 직종, 학교 교사 3개 직종, 장학관·연구관 및 교육전문가, 법률전문가 5개 직종, 시민단체 활동가,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2개 직종, 경찰관·소방관 및 교도관 3개 직종, 군인 4개 직종, 의사 5개 직종, 약사 및 한약사, 레크리에이션강사 및 기타 관련 전문가,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, 경호·보안 종사자 4개 직종, 경비원,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, 청소원,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, 가사도우미, 제품·광고 영업원, 기타 기술 영업·중개 종사원, 온라인 판매원, 노점 및 이동 판매원, 방문 판매원, 항공기 조종사, 선장·항해사 및 도선사, 우편집배원
 - * 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는 제외
 - **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
 - *** 파견직은 참여제외(단, 수행기관 위탁없이 개발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 심의 후 참여가능
 - **** 일부 직종은 직업 예시까지 세분화하여 참여 가능 여부 관리(세부내용 부록참조)

세분류 직업명		제외여부	적용기준
0139	부동산·조사·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	조건부 제외	관리소장은 참여가능 조건 충족 시 참여 허용
5230	숙박시설 서비스원		룸메이드는 참여 제외
6229	기타 자동차 운전원		대리운전기사는 참여 제외
6212	선장, 항해사 및 도선사	제외 (조건부 허용)	항해사 참여 허용

구분	참여기업 지원금		
	총액	지원금 형태	지원내용
일반형	1인당 최대 270만원 지원	인턴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 *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		채용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3개월간 1인당 월 급여의 50% 지원 * 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, 최대 3개월
세대 통합형	1인당 300만원 지원	채용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(일시금) * 참여자의 누적 급여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지원
장기취업 유지형	1인당 최대 280만원 지원	장기 취업 유지 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턴십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한 경우, 18개월 80만원, 24개월 80만원, 30개월 60만원, 36개월 60만원 지원(총 4회) * 지원기준일(18·24·30·36개월 경과 시점)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기업에 한해 지원

구분	2024	2025
사업목적 (1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목적)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○ (사업정의)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○ (사업운영안내 목적) 본 사업 안내는 「2024년 시니어인턴십 사업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,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목적) 60세 이상자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직업능력 강화 및 재취업기회를 촉진함과 동시에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도모 ○ (사업정의)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○ (사업운영안내 목적) 본 사업 안내는 2025년 <u>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 사업</u>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각 참여 주체의 역할과 지원내용, 지원절차 등 사업 운영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
사업추진 근거 (1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노인복지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- 제23조의2(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 ○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11조(고용과 소득보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.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<u>노인일자리법</u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<u>노인일자리법 제10조(취업 지원 등) 제2항</u>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일자리 <u>현장적응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훈련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</u> 할 수 있다. - <u>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7조(현장실습 훈련 지원 기준 등)</u>
용어의 정의 (3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시니어인턴십 사업”(이하 “인턴십”)이라 함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“<u>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</u>”(이하 “시니어인턴십”, “인턴십”)이라 함은 <u>노인일자리법 10조</u>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“<u>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</u>”으로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고령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신규 및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

구분	2024	2025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개요 (4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정의)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○ (추진근거) 노인복지법 제23조, 제23조의2,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 11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사업정의) 60세 이상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○ (추진근거) 노인일자리법 제10조(취업지원 등)제2항, 동법 시행령 제7조(현장 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)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개요 (5p)	<p>○ (지원내용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0 551 855 1028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지원 유형</th> <th colspan="3">지원내역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수행기관 지원금</th> <th rowspan="2">참여기업 지원금</th> </tr> <tr> <th>위탁운 영비</th> <th>채용성 공보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 형</td> <td>1인당 30만원</td> <td>1인당 최대 20만원</td> <td>(월 최대 40만원, 최 대 6개월</td> </tr> <tr> <td>세대 통합 형</td> <td>1인당 30만원</td> <td>1인당 최대 20만원</td> <td>1회 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장기 취업 유지 형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1인당 최대 28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 유형	지원내역			수행기관 지원금		참여기업 지원금	위탁운 영비	채용성 공보수	일반 형	1인당 30만원	1인당 최대 20만원	(월 최대 40만원, 최 대 6개월	세대 통합 형	1인당 30만원	1인당 최대 20만원	1회 300만원	장기 취업 유지 형	-	-	1인당 최대 280만원	<p>○ (지원내용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82 551 1417 1028"> <thead> <tr> <th rowspan="3">지원 유형</th> <th colspan="3">지원내역</th> </tr> <tr> <th colspan="2">수행기관 지원금</th> <th rowspan="2">참여기업 지원금</th> </tr> <tr> <th>위탁운 영비</th> <th>채용성 공보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반 형</td> <td>1인당 30만원</td> <td>1인당 최대 20만원</td> <td>(인턴지원금) 월 최대 40만원, 최대 3개월 (채용지원금) 월 최대 50만원, 최대 3개월</td> </tr> <tr> <td>세대 통합 형</td> <td>1인당 30만원</td> <td>1인당 최대 20만원</td> <td>1회 300만원</td> </tr> <tr> <td>장기 취업 유지 형</td> <td>-</td> <td>-</td> <td>1인당 최대 280만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지원 유형	지원내역			수행기관 지원금		참여기업 지원금	위탁운 영비	채용성 공보수	일반 형	1인당 30만원	1인당 최대 20만원	(인턴지원금) 월 최대 40만원, 최대 3개월 (채용지원금) 월 최대 50만원, 최대 3개월	세대 통합 형	1인당 30만원	1인당 최대 20만원	1회 300만원	장기 취업 유지 형	-	-	1인당 최대 280만원
지원 유형	지원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행기관 지원금		참여기업 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탁운 영비	채용성 공보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 형	1인당 30만원	1인당 최대 20만원	(월 최대 40만원, 최 대 6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대 통합 형	1인당 30만원	1인당 최대 20만원	1회 3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기 취업 유지 형	-	-	1인당 최대 28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지원 유형	지원내역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행기관 지원금		참여기업 지원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위탁운 영비	채용성 공보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 형	1인당 30만원	1인당 최대 20만원	(인턴지원금) 월 최대 40만원, 최대 3개월 (채용지원금) 월 최대 50만원, 최대 3개월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세대 통합 형	1인당 30만원	1인당 최대 20만원	1회 30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기 취업 유지 형	-	-	1인당 최대 280만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행기관자 격요건 (8p)	<p>수행기관 자격요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 로 등록된 기관 ②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, 지자체 위탁 노인취업지원기관(센터) 등 ③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 소개소 ④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⑤ 전경련, 경총,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지부, 산하단체 ⑥ 기업(직능별) 협회 또는 협동조합, 기업 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⑦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	<p>수행기관 자격요건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으 로 등록된 기관 ②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, 지자체 위탁 노인취업지원기관(센터) 등 ③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의한 무료직업 소개소 ④ 직업안정법 제19조에 의한 유료직업 소개소 ⑤ 직업안정법 제23조에 의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⑥ 전경련, 경총,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 지부, 산하단체 ⑦ 기업(직능별) 협회 또는 협동조합, 기업 지원단체 및 기업주 단체 등 ⑧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및 단체 등 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참여기업 모집 및 관리 (11p)	<p><참여 제외 기업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0 1921 847 2033"> <tbody> <tr> <td>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 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</td> </tr> <tr> <td>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 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	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	<p><참여 제외 기업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82 1921 1417 2033"> <tbody> <tr> <td>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 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</td> </tr> <tr> <td>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 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	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 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3개월 미만의 계절 수요 업체, 소비 향락업 체, 다단계판매업체 등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임금체불 확정 사업장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분	2024	2025
	<p>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,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※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·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<p>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 없는 기업</p> <p>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</p>	<p>③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단, 일자리 창출에 협력이 필요한 경우, 업무협약에 따라 참여할 수 있음 ※ 각 부처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후 지원·관리기간이 종료된 경우 참여 가능 ※ <u>고령자 고용지원금,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 등 기금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 산정기간이 중복될 경우를 제외</u>하고 지원가능 <p>④ 기존 참여기업 중 최근 2년간 계속고용 실적 없는 기업</p> <p>⑤ 기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직종</p>
<p>실행계획 수립 (14p)</p>	<p>○ (실행계획 신청)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 후 사업실행계획을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개발원에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기업별로 별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참여기업 신청서와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서를 포함 - 수행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자격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가능 - 참여기업 실행계획서에 대한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상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이미 해당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자(일반형)는 참여 불가 ※ 단, 업무시스템 장애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(개발원 공문 필요) 	<p>○ (실행계획 신청) 수행기관은 참여기업과 협약 후 사업실행계획을 <u>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</u>을 통해 개발원에 신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기업별로 별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참여기업 신청서와 참여기업과 체결한 협약서를 포함 - 수행기관은 신청기업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기업 또는 자격요건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가능 - 참여기업 실행계획서에 대한 <u>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상</u> 심의요청일을 기준으로 이미 해당기업에 취업한 60세 이상자(일반형)는 참여 불가 ※ 단, <u>정보시스템</u> 장애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(개발원 공문 필요) ※ 단, <u>심의요청일과 참여 시작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 참여 가능</u>
<p>참여자 모집 및 관리 (15p)</p>	<p>○ (참여자 요건)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의 교육이 제한되는 	<p>○ (참여자 요건) 60세 이상으로 참여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개발원 또는 수행기관의 교육이 제한되는

구분	2024	2025
	<p>경우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일반형 참여자) 60세 이상 자 - (세대통합형 참여자)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<p>※ 청년(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)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</p>	<p>경우 참여기업에서 진행하는 교육으로 대체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일반형 참여자) 60세 이상 자 - (세대통합형 참여자) 60세 이상의 숙련기술 보유자로 유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해당 업종 관련 1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<p>※ 청년(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(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최대 3년 연장 가능))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계약 필요</p>
<p>참여자 교육 (17p)</p>	<p><신설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디지털 직무교육)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7조 교육지원의 일환으로 디지털 직무분야 교육과정(소양·안전·직무·디지털교육 등)을 개발하여, 참여자를 모집교육 수료 후 인턴십 연계 시, 수행기관 위탁운영비 추가지원가능 <p>※ 디지털·직무교육 등을 포함한 20시간 교육과정으로 운영(온라인교육 50%이내, 개발원 사전 승인)</p>
<p>참여자 근무조건 및 근무관리 (19p)</p>	<p>○ (약정기간) 일반형 인턴 약정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되,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기간을 단축 가능(최소 1개월 이상)</p>	<p>○ (약정기간) 일반형 인턴 약정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으로 하되, 약정체결 이후에도 기업 사정 등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기간을 단축 가능(당해연도 1개월 이상 근무)</p>
<p>참여자 근무조건 및 근무관리 (19p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자 사고 발생 시 수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, 수행기관은 사고 발생내역 및 산재처리 여부 등을 업무시스템을 통해 입력 및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참여자 사고 발생 시 참여기업은 수행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, 수행기관은 사고 발생내역 및 산재처리 여부 등을 관리

구분	2024	2025
<p>참여자 근무조건 및 근무관리 (22p)</p>	<p>관리 필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마. 고충처리 관리 강화</p> <p>○ (고충처리 관리) 개발원은 참여자가 근무 중 겪을 수 있는 부당행위, 애로사항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신고센터 운영 가능</p> <p>- 참여기업의 부당행위 등에 대해 고충이 접수된 경우 수행기관은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개발원은 현장조사 실시 가능</p> <p>- 참여기업은 부당행위 등 참여자의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, 현장조사가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해 적극협조</p>
<p>수행기관 지원금 관리 (25p)</p>	<p>○ (지원수준) 개발원은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자 1인당 30만원의 위탁운영비 지급</p> <p>- 단 참여자 월 급여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위탁운영비 미지급(중도포기자 제외)</p>	<p>○ (지원수준) 개발원은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자 1인당 30만원의 위탁운영비 지급</p> <p>- 단 참여자 월 평균 급여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위탁운영비 미지급(중도포기자 제외)</p> <p>- 위탁기간 만료, 사업 중도포기 등 기존 수행기관의 참여자 실적을 타 수행기관으로 이관하여 잔여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, 참여자 1인당 5만원 위탁운영비 지급 가능</p>
<p>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및 관리(수행기관→참여기업) (30p)</p>	<p>- (채용지원금)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해당연도 계속근로계약(6개월 이상)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%, 최대 월 40만원 지원</p>	<p>- (채용지원금) 참여기업이 약정기간 종료 후 해당연도 계속근로계약(6개월 이상)을 체결하고 해당 참여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최대 3개월간 월 급여의 50%, 최대 월 50만원 지원</p>
<p>참여기업 지원금 지급 및 관리(수행기관→참여기업) (32p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	<p>※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수령 후 4대 보험 이종 가입이 확인 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</p> <p>※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</p>

구분	2024	2025														
부적격 및 부정수급 관리 (36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참여기업) 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였거나, 수급한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그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인턴십 참여를 금지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인턴십 참여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참여기업) 보조금을 부정하게 신청, 수급·집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5년간 인턴십 참여 금지,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														
수행기관 및 참여기업 점검 (38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점검 실시) 수행기관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(서식18) - 자체 점검계획에 의거 대면·비대면 점검이 가능하나, 전체 참여기업의 50% 이상은 대면점검 실시 (단, 신규기업은 대면점검 실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점검 실시) 수행기관은 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하여 당해연도 내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(서식18) - 자체 점검계획에 의거 대면·비대면 점검이 가능하나, 전체 참여기업의 <u>30% 이상은 대면점검 실시(단, 신규기업 중 3인 이상 채용 기업은 대면점검 실시)</u> 														
개인정보보호 의무 (43p)	※ 개인정보 수집 근거 :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	※ 개인정보 수집 근거 :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14조														
개발원 직접사업 추진 (44p)	<신설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발원 직접운영 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할 수 있으며, 참여기업은 개발원과 협약체결 한 경우, 수행기관 협약체결을 통해 별도 참여 가능 														
114P	<p>[부록] 직종분류표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20 1693 869 2022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세분류 직업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0139) 부동산·조사·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</td> <td>조건부 제외</td> </tr> <tr> <td>(5230) 숙박시설 서비스원</td> <td>조건부 제외</td> </tr> <tr> <td>(6229) 기타 자동차 운전원</td> <td>조건부 제외</td> </tr> <tr> <td>(6212) 선장, 항해사 및 도선사</td> <td>제외(조건부 허용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세분류 직업명		(0139) 부동산·조사·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	조건부 제외	(5230) 숙박시설 서비스원	조건부 제외	(6229) 기타 자동차 운전원	조건부 제외	(6212) 선장, 항해사 및 도선사	제외(조건부 허용)	<p>[부록] 직종분류표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879 1727 1428 1845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세분류 직업명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(6212) 조경원</td> <td>허용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세분류 직업명		(6212) 조경원	허용
세분류 직업명																
(0139) 부동산·조사·인력알선 및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	조건부 제외															
(5230) 숙박시설 서비스원	조건부 제외															
(6229) 기타 자동차 운전원	조건부 제외															
(6212) 선장, 항해사 및 도선사	제외(조건부 허용)															
세분류 직업명																
(6212) 조경원	허용															

구분	2024	2025
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관련서식(변경)	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(변경) [서식 1]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신청서 ○(변경) [서식 2]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운영계획서(수행기관용) ○(변경) [서식 4]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운영위탁계약서 ○(변경) [서식 6]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기업 신청서 ○(변경) [서식 7] 세대통합형 참여기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○(변경) [서식 8]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지원 협약서 ○(변경) [서식 9]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○(변경) [서식 10]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참여자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○(변경) [서식 11]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약정서 ○(변경) [서식 12] 현장실습 훈련(시니어인턴십) 지원사업 표준 근로계약서 ○(변경) [부록] 직종 분류표(한국고용직업분류. 2018) 	

5 문의 및 접수처

- 세종상공회의소 회원사업팀
TEL. 070-7780-2440
E-Mail. sccisenior@naver.com
adress.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펠리체타워3, 5층
- 세종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
<http://sejongcci.korcham.net>